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 중수청의 보완·재수사 명시〉
〈중수청 출범에 따른 관련 법률 정비〉
- 이해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20544호)
 - 이해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20761호)

2026. .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장지원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중대범죄의 범위 명확화 및 중복규정 정비	3
2.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 보완·재수사의 근거 및 범위 명시 ...	6
3. 인지 사실이 통보된 범죄수사에 대한 이첩요청 근거 마련	12
4. 다른 법률의 개정	14

I. 제안경위

1. 이해식의원안

1. 제 안 자 : 이해식의원 등 10인
2. 제안연월일 : 2026. 8. 11.
3. 회부연월일 : 2026. 8. 11.

2. 이해식의원안

1. 제 안 자 : 이해식의원 등 10인
2. 제안연월일 : 2026. 8. 25.
3. 회부연월일 : 2026. 8. 2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이해식의원안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확립하면서도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대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스토킹범죄, 아동학대범죄,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노인학대관련범죄 및 가정폭력범죄 등 7대 범죄에 대해서는 개별법에 따라 검사가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 보완수사 또는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이에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이 형사소송법에 따른 보완수사 및 재수사 요구를 받은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및 재수사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기술유출 관련 중대범죄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중복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다른 수사기관으로부터 인지통보를 받은 사건도 이첩요청 대상임을 명확히 하여 중대범죄수사청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수사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나목 신설, 안 제2조제1호마목 및 제43조제2항 및 제3항).

2. 이해식의원안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함에 따라,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맞게 관계 법률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을 통해 「경범죄 처벌법」 등 9개 법률을 일괄 개정하여,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의 법적 지위와 직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관계 법률에 반영하는 등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따른 법률 간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부칙 제7조).

Ⅲ. 검토의견

1. 중대범죄의 범위 명확화 및 중복규정 정비

개정안은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의 수사대상이 되는 중대범죄의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마목).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중대범죄”란 다음 각 목의 범죄를 말한다.	1. ----- -----.
가. ~ 라. (생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 및 제38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18조의2부터 <u>제18조의4</u> 까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 및 <u>같은 조 제2항, 「형법」 제356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u>	마. ----- ----- ----- ----- ----- ----- <u>제18조의4</u> <u>지의 범죄와</u> ----- ----- ----- ----- ----- <u>같은</u> <u>조 제2항 중 국가핵심기</u> <u>반(「재난 및 안전관리 기</u>

현행	개정안
<u>법률」 제3조의 범죄 중 기술유출 등 국가핵심기반</u> <u>(「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2호의 국가</u> <u>핵심기반을 말한다) 공격</u> <u>에 해당하는 사이버범죄</u> 바. ~ 사. (생략)	<u>본법」 제3조제12호의 국</u> <u>가핵심기반을 말한다) 공</u> <u>격에 해당하는 범죄</u> 바. ~ 사. (현행과 같음)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21491호, 2026. 3. 24. 제정 및 10. 2. 시행, 이하 “현행법”) 제2조제1호는 중대범죄의 범위를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규정의 체계성과 명확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었음.

첫째, 제2조제1호마목에 열거된 중대범죄 중 「형법」 제356조의 범죄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범죄는 같은 호 가목 및 나목¹⁾에서 이미 해당 범죄를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있어 그 범위가 일부 중복되는 문제가 있었음.

둘째, 마목의 범죄 중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

1)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21491호, 2026. 10. 2. 시행예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범죄”란 다음 각 목의 범죄를 말한다.

가. 「형법」 제2편제1장의 죄, 제2장의 죄, 제39장의 죄, 제40장(제355조부터 제361조까지)의 죄, 제122조, 제124조부터 제133조까지, 제141조, 제225조, 제227조, 제227조의2 및 제229조(제225조, 제227조 및 제227조의2의 행사죄에 한정한다), 「변호사법」 제111조, 「정치자금법」 제45조, 「국가정보원법」 제21조 및 제22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범죄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제5조, 제6조, 제8조, 제8조의2 및 제11조의 범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범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4조 및 제125조의 범죄

률」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는 인용된 조문에 해당하는 범죄 전체를 중대범죄로 규정하려는 반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는 국가핵심기반 공격에 해당하는 사이버범죄에 한정하려는 취지로 보이나, 현행 문언만으로는 그 적용범위와 경계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았음.

셋째, 중대범죄의 범위를 기술유출 등과 관련된 범죄 중 사이버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나, 기술유출 또는 국가핵심기반에 대한 침해가 반드시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사이버범죄의 형태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이를 사이버범죄로 한정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측면이 있었음.

이에 개정안은 가목 및 나목과 중복되는 범죄를 마목에서 삭제하고, 국가핵심기반 공격에 관한 한정이 적용되는 범위를 명확히 하는 한편, ‘사이버범죄’로 한정하는 문구 등을 삭제함으로써 현행 규정의 중복 및 해석상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중대범죄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법률 해석 및 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 보완·재수사의 근거 및 범위 명시

개정안은 공소청이 「형사소송법」에 따라 다른 수사기관이 최초수사를 한 사건에 대하여 중수청에 보완수사 또는 재수사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사건이 중대범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성폭력·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이면 중수청이 보완수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나목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중대범죄등”이란 중대범죄 및 다음 각 목의 범죄를 말한다. 가. (생략) <신설>	제2조(정의) ----- -----. 2. ----- ----- ----. 가. (현행과 같음) 나.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제8항에 따라 각급 공소청의 장이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 보완수사요구를 한 범죄 및 동법 제245조의8제9항에 따라 각급 공소청의 장이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 재수사요구를 한 범죄. 이 경우 그 범죄

현 행	개 정 안
	는 다음 1)부터 7)까지의 범죄로 한정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 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 범죄 2) 「아동·청소년의 성보 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 소년대상 성범죄 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 죄 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 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 대범죄 5) 「장애인복지법」 제2 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 학대관련범죄 6) 「노인복지법」 제1조 의2제5호에 따른 노인학 대관련범죄 7)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현 행	개 정 안
나. (생 략) 다. 중대범죄 및 <u>가목·나목</u>의 범죄와 관련하여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u>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가정폭력범죄</u> 다. (현행 나목과 같음) 라. ----- <u>가목부터 다목까지의</u> -----

「형사소송법」 개정(법률 제21857호,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으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폐지되고,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도록 개편되었음.

이와 함께, 최초수사 과정에서 부실수사나 수사관의 비위 등이 의심되는 경우 동일한 수사기관에 다시 수사를 맡기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공소청이 해당 수사관서의 상급 수사관서 또는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하여 보완수사 또는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음²⁾³⁾.

2) 「형사소송법」(법률 제21857호, 2026. 10. 2. 시행예정)

제197조의2(보완수사요구) ⑧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완수사요구에 대하여 해당 사법경찰관의 적정한 보완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사법경찰관이 속한 수사관서의 상급 수사관서 또는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하여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다.

제245조의8(재수사요구) ⑨ 각급 공소청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수사요구에 대하여 해당 사법경찰관의 적정한 재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사법경찰관이 속한 수사관서의 상급 수사관서 또는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하여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3) 이하 보완수사 및 재수사는 다른 수사기관이 최초수사를 한 사건에 대하여 중수청이 수행하는 보완수사 및 재수사를 의미함.

중수청의 수사대상은 “중대범죄등”으로, 부패, 경제, 마약, 내란·외환 등과 관련된 범죄가 이에 해당함⁴⁾. 개정안은 중수청의 수사대상인 이러한 “중대범죄등”에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청으로부터 보완수사 또는 재수사 요구를 받은 범죄를 포함하면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7가지 범죄(①성폭력범죄, ②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③스토킹범죄, ④아동학대범죄, ⑤장애인학대관련범죄, ⑥노인학대관련범죄, ⑦가정폭력범죄)로 명시 및 한정함으로써 중수청이 수행할 수 있

4)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21491호, 2026. 10. 2. 시행예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범죄”란 다음 각 목의 범죄를 말한다.

- 가. 「형법」 제2편제1장의 죄, 제2장의 죄, 제39장의 죄, 제40장의 죄, 제122조, 제124조부터 제133조까지, 제141조, 제225조, 제227조, 제227조의2 및 제229조(제225조, 제227조 및 제227조의2의 행사죄에 한정한다), 「변호사법」 제111조, 「정치자금법」 제45조, 「국가정보원법」 제21조 및 제22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범죄
-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제5조, 제6조, 제8조, 제8조의2 및 제11조의 범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범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4조 및 제125조의 범죄
-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선환급에 관한 특별법」, 「전자금융거래법」 및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각각 규정된 범죄, 「형법」 제114조의 범죄
- 라.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및 「군사기밀 보호법」에 각각 규정된 범죄
- 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 및 제38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4까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제11호부터 제14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 「형법」 제356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범죄 중 기술유출 등 국가핵심기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2호의 국가핵심기반을 말한다) 공격에 해당하는 사이버범죄
-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인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의 범죄
- 사. 「형법」 제123조의2의 범죄

2. “중대범죄등”이란 중대범죄 및 다음 각 목의 범죄를 말한다.

- 가. 공소청 소속 공무원, 경찰공무원(다른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파견공무원을 포함한다), 법원 소속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 이 경우 전단에 따른 공무원은 그 직(職)에서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
- 나. 개별 법률에서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중대범죄수사청이나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고발하도록 하거나 수사를 의뢰하도록 규정한 범죄
- 다. 중대범죄 및 가목·나목의 범죄와 관련하여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제4조(직무) 중대범죄수사청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중대범죄등에 대한 수사
- 2. 법률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는 보완수사 또는 재수사의 근거와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개정안은 성폭력·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관계나 연령·장애 등으로 인하여 피해사실을 충분히 진술 하거나 스스로 권리를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보완수사 또는 재수사를 통해 수사의 충실성을 높이고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다만,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제8항은 보완수사 요구의 주체를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제245조의8제9항은 재수사 요구의 주체를 “각급 공소청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보완수사와 재수사 모두 그 요구 주체를 “각급 공소청의 장”으로 규정한바, 「형사소송법」과 동일하게 보완수사의 경우 지청의 장까지 포함할 것인지, 아니면 중수청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의 주체를 각급 공소청의 장으로 한정할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한, 개정안은 시행일을 현행법과 동일한 2026년 10월 2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에 따라 제2조제2호의 체계가 변경되면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규정한 시행령 제2조5)의 위임조문 및 규정대상도

5)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6596호, 2026. 10. 2. 시행 예정)

제2조(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다목의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는 중대범죄 및 같은 호 가목·나목의 범죄(이하 이 조에서 “해당 범죄”라 한다)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범죄로 한다.

1.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 위증죄, 허위감정통역죄 또는 장물에 관한 죄
2. 해당 범죄와 관련하여 동시 또는 수단결과의 관계에서 행해진 범죄
3. 해당 범죄에 대한 무고죄

변경되므로, 시행일까지 시행령의 관련 사항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필요가 있음.

3. 인지 사실이 통보된 범죄수사에 대한 이첩요청 근거 마련

개정안은 다른 수사기관이 중대범죄와 관련된 범죄를 인지하여 중수청에 통보한 경우에도 중수청이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이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3항).

현 행	개 정 안
제43조(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제43조(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다른 수사기관은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중대범죄 또는 제2조제2호가목·나목의 범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를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 ----- ---- 제2조제2호가목·다목의 ----- ----- -----.
③ 중대범죄수사청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하여 제2조제1호의 범죄로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범죄수사에 대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	③ 제2항에 따라 인지 사실이 통보된 범죄수사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하여 ----- ----- ----- ----- ----- ----- ----- ----- ----- -----

현 행	개 정 안
을 요청한 경우에는 고위공직 자범죄수사처장이 그 이첩 여 부를 결정할 수 있다.	----- ----- ----- .

현행법은 중수청의 범죄수사와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가 중복되는 경우, 중수청이 해당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첩을 요청하면 해당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이에 더하여 제43조제2항에 따라 다른 수사기관으로부터 인지 사실이 통보된 범죄수사에 대해서도 중수청이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법에 따르면 중수청과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가 실제로 중복되는 경우 비로소 중수청이 사건의 이첩을 요청할 수 있는 비효율이 발생하는바, 개정안은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인지하여 중수청에 통보한 수사 초기 단계에서 수사기관 간 사건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복수사로 인한 수사인력 및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하고, 사건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4. 다른 법률의 개정

개정안은 현행법 제정으로 10월 2일 중수청이 출범하는 것에 맞춰, 중수청장 및 중수청수사관의 법적 지위와 직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경범죄 처벌법 등 9개 관계 법률에 반영하려는 것임(안 부칙 제7조).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21491호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7조(시행일) <u><신 설></u> <u><신 설></u> ① (생 략) <u><신 설></u>	법률 제21491호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7조(시행일) ① <u>경범죄 처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u> <u>제3조제1항제34호 중 “경찰공무원”을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경찰공무원”으로 한다.</u> ② <u>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u> <u>제2조제9호 중 “총경(자치총경을 포함한다)”을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4급 이상의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총경(자치총경을 포함한다)”으로 한다.</u> ③ (현행 제1항과 같음) ④ <u>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u>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조제5항 중 “교정시설 또는 국가경찰관서”를 “<u>교정시설이나 경찰서 등 수사기관</u>”으로, “<u>교정시설의 장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u>”을 “<u>교정시설의 장이나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장</u>”으로 한다. ⑤ 민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2조 중 “<u>교도소·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u>”을 “<u>교도소·구치소나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유치장</u>”으로, “<u>교도소·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u>”을 “<u>교도소·구치소의 장이나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장</u>”으로 한다. 제311조제4항 중 “<u>경찰공무원이 경찰서유치장·교도소</u>”를 “<u>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경찰공무원이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유치장이나 교도소</u>”로 한다. <신 설> ⑥ 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2항 중 “<u>경찰공무원</u>”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을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경찰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경찰서유치장,”을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유치장이나”로 한다.
<u><신 설></u>	⑦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u><신 설></u>	제13조의3제1항 중 “경찰청장”을 “중대범죄수사청장, 경찰청장”으로 한다.
<u><신 설></u>	⑧ 전자금융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u><신 설></u>	제6조의2제1항 중 “경찰청장”을 “중대범죄수사청장, 경찰청장”으로 한다.
② (생 략)	⑨ (현행 제2항과 같음)
<u><신 설></u>	⑩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u><신 설></u>	제22조제1항 단서 중 “군인·검사 또는 경찰관”을 “군인·검사·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또는 경찰관”으로 한다.
<u><신 설></u>	⑪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

현 행	개 정 안
	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및 제5항 중 “검찰총장”을 각각 “검찰총장,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한다.

현행법은 부칙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에서 2개 법률(「국가공무원법」과 「정부조직법」)의 개정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음⁶⁾.

개정안은 부칙 제7조에 ① 「경범죄 처벌법」, ②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③ 「국세기본법」, ④ 「민사소송법」, ⑤ 「법원조직법」, ⑥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⑦ 「전자금융거래법」, ⑧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⑨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등 9개 법률의 개정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9개 법률의 개정내용]

법 률	관련사항	개정내용
경범죄 처벌법	지문채취 불응 시 경범죄로 처벌	지문채취 요구권자: 경찰공무원, 검사 → 중수청수사관 추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병역사항 신고의무자	총경(자치총경 포함) 이상의 경찰공무원 → 중수청장, 4급 이상 중수청수사관 추가

6) 중수청이 출범하는 2026년 10월 2일부터 행정안전부와 중수청에 특정직 공무원으로서 중수청 수사관을 실·국장 등의 직위에 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

국세기본법		◦ 교정시설,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유치장으로 확대 ◦ 교정시설의 장, 국가경찰관서의 장 →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장으로 확대
민사소송법	송달서류의 수령인이 유치장에 있는 경우 유치장의 장 등에게 서류를 송달	◦ 교도소, 구치소,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유치장으로 확대 ◦ 교도소장, 구치소장, 국가경찰관서의 장 →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장으로 확대
	증인 불출석 시 재판장 명령에 따라 경찰공무원 등이 경찰서유치장 등에 감치 집행	◦ 감치집행자: 법원공무원, 경찰공무원 → 중수청수사관 추가 ◦ 감치장소: 경찰서유치장, 교도소, 구치소 →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유치장으로 확대
법원조직법	법정 소란행위 시 법원이 경찰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즉시 행위자를 구속, 감치 재판을 통해 경찰서유치장 등에 감치할 수 있음	◦ 감치집행자: 법원직원, 교도관 또는 경찰공무원 → 중수청수사관 추가 ◦ 감치장소: 경찰서유치장, 교도소, 구치소 →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유치장으로 확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경찰청장 등은 과기부장관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 불법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를 요청할 수 있음	◦ 검찰총장, 경찰청장, 금감원장 → 중수청장 추가
전자금융거래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경찰관 등은 집회·시위 방해금지 규정 위반 시 가중처벌 (3년 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이하의 징역)	◦ 군인, 검사, 경찰관 → 중수청수사관 추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경찰청장 등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 검찰총장, 경찰청장 → 중수청장 추가

개정안은 중수청 출범과 동시에 중수청장 및 중수청수사관이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 법률에 필요한 권한과 의무 등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시행에 따른 법적 공백을 방지하고 중수청의 실질적인 수사업무 수행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임.

한편, 개정안은 다른 법률의 조문을 직접 개정하는 대신 부칙을 통해 개정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은 해당 법률을 소관하는 위원회의 심사 범위를 벗어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법률의 제정·개정에 따라 이와 관련된 사항을 정리하기 위하여 기존 법률을 개정’하거나, ‘관련 법률을 기본이 되는 법률에 맞도록 개정’하는 등의 경우에 사용됨⁷⁾.

다만, 부칙을 통한 다른 법률의 개정은 법률의 제정·개정에 따라 관련 법률의 자구·인용조항 등을 정비하거나 기본이 되는 법률에 맞도록 관련 사항을 함께 개정할 수 있어, 법체계의 통일성을 기하면서도 관련 법률을 별도로 입법·심의하는 비효율성을 피할 수 있다는 점과 법률 개정의 시차에 따른 법 집행상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⁸⁾. 개정안은 이에 따른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333

7) 법제기준과 실제(2024 증보판) p.912 국회사무처 참고

8) 법제기준과 실제(2024 증보판) p.908, 국회사무처 참고